KiRi 보험법 리뷰
이슈 분석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과 특별이익 규제

백영화 연구위원

요 약

보험회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예: 특정 스포츠단 우승 시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 할인 적용 등),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에 의하면 이 경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의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의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 보험회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됨[1)]
    ① 금품(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③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④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⑥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⑦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특정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의 기본 원리인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및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에 반하고, 특별이익 제공을 방치하는 경우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사이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모집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 요인이 되거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임
- 보험회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인 스포츠단이 우승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거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이것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

1) 이의 위반 시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감독당국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들에 의하면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은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특정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무료 어린이보험 또는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사례 ①)[2)]
  - 우선,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 대납에 해당한다고 봄
  - 아울러, 특정 보험료(예: 1,004원, 2,019원)를 맞추기 위해 보험요율 산출 원칙이나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하는 것 또한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 대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 보험회사가 특정 기간(예: 경기 시즌)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한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거나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에서도, 금융위원회는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회신하였음(사례 ②)[3)]
  - 특정 기간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한하거나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모집 질서 및 고객 간 형평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본 것임

○ 기초서류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험료 할인의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특별이익으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4)]

-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 등의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의 거래 조건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됨
  - 보험업법에서도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보험료의 할인은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음(보험업법 제98조 제2호)
  - 사례 ①에서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경우라도 보험요율 산출 원칙이나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처럼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할인율이 과도한지 아닌지 개별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한다면 수범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험료 할인의 수준 등을 개별 사안별로 따져서 보험업법 제98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및 적용하고, 다만

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021)
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00231); 한편 해당 사안에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백영화·손민숙(2022),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그 보험료 할인의 정도나 내용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보험업법 제129조)이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보험업법 제128조의3)에 위반될 정도라면 그러한 보험요율 산출 원칙이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위반의 문제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5)]

- 또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 없는 이벤트나 캠페인성 보험료 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한다면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소지도 있을 수 있음
  - 사례 ②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았음
  -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혜택 제공이라는 이유로 이를 특별이익으로 금지한다면, 보험회사의 다양한 마케팅을 제한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실제로 은행 등의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이나 특정 야구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상품,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적금 상품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 사례도 많은데, 보험소비자의 경우에는 특별이익 규제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
  - 이에,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무관한 보험료 할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라면 특별이익으로는 규제하지 않고, 다만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취지를 고려해서 일정 범위(예컨대 부가보험료 범위 또는 부가보험료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만 할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보험업법 제128조의3)에 포함시켜서 기초서류 규제로서 규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5) 한편 보험료 할인과는 달리 무료 보험 제공(보험료 대납)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기초서류에 근거한 경우를 별도로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음. 보험료 대납의 경우에도 사전에 기초서류에서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이익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기초서류에 근거한 보험료의 대납'을 특별이익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그 정도(금액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자 한다면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포함시켜서 규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